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025년)

1. 계약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2. 서비스 이용계약

- 1)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.
- 2)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,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3)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,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,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,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.

3. 계약기간

급여이용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하며,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 단,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서비스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.

1) 재가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(2025.01.01.)

가.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	150분 이상	49,160
60분 이상	24,580	180분 이상	55,350
90분 이상	33,120	210분 이상	61,670
120분 이상	49,160	240분 이상	68,030

나.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6,48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7,9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

다.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라.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, 6%

5. 이용료 및 비용 변경
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며,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.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3)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의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

6. 신원 인수인의 권리, 의무

- 1) 서비스이용장에 대하여 신원 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은 1명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2)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급여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3) 신원 인수인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- 4) 신원 인수인은 월 이용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.
- 5) 신원 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요수칙을 준수한다.
- 6) 신원 인수인은 급여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.
- 7)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8) 신원 인수인은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,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9) 신원 인수인은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.

7. 계약의 해제

- 1)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가.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나. 계약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다.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

라. 기타 개인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2)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가. 서비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나.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다.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라.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마.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바. 서비스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거 제 사 랑 노 인 복 지 센 터